

News Flash

February 23, 2026 | 글로벌 통상 Platform

美 IEEPA 상호관세 부과 대법원 무효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Summary

본 News Flash는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¹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122 기반 관세(15%) 재부과 선언**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 기업이 즉시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70억 달러 규모² (약 10조 원 안팎)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리는 동시에, 반면 무역법 122조 관세 부과로 **단기적 관세 부담은 지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관세 환급, 이전가격 전략, 공급망·대미 진출 전략 등 전방위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¹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² 상호관세 부과 기간 별 미국 수입 금액 중 한국산 비중 집계, 주요 상호관세 예외 대상 품목(예: 자동차,반도체 등) 제외 후 관세율 구간별 합산 추정

① 10% 구간: 25.04.05 - 25.08.06 ② 15% 구간: 25.08.07 - 26-02.19

판결 상세 요약 (Legal Background)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현지 시각), 대통령이 IEEPA에 규정된 "regulate... importation(수입 규율)" 권한을 관세 부과 권한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Congress)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다음 조치는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10% 보편(Universal) 관세
-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한국 15%)
- 펜타닐·이민 관련 비상선언을 근거로 한 국가별 관세

다만, 대법원이 직접적인 환급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국제무역법원(CIT)이 환급 절차·적용 범위 등을 재판을 통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급 소송과 행정절차에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큼니다.

한국 기업 영향

상호관세 환급청구 가능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만 청구 가능하며, 무역법 232조 등과 같은 품목관세(예: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적용 품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5년 기준(연간 환산), 한국산 대미 수출은 약 1,224~1,257억 달러로 추정되며, IEEPA 적용 가능분(면제·중복금지 품목 차감)은 약 598~613억 달러 범위로 산정되어 이에 따른 환급 잠재치는 약 69~71억 달러(원화 약 10.0~10.2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³

무역법 122조 추가 관세 및 232조 관세 지속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15% 추가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즉시 발효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최장 150일까지 부과 가능하며, IEEPA 대체수단으로 단기간 수입 전반에 부담을 부과하는 장치로서 한국 기업은 여전히 15% 수준의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확대 50%), 자동차·부품(광범위 적용) 등 232조에 의해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한국은 상호관세 협상 당시 양자 딜을 통해 자동차·부품 15% 등 상한/감축 조정을 추진·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1조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하게 관세 부과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

환급 청구 준비

환급 절차는 향후 발표 예정이지만, **선제적 준비가 환급 속도와 규모를 좌우합니다.**

먼저 미국 통관데이터인 ACE 시스템을 통해 IEEPA 요소만 분리 (Entry/Line/HTS/납부코드 등) 하여 환급 가능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합니다. 그리고 Liquidation (청산) 여부에 기초한 수입자의 현재 납부 Position에 따른 PSC(Post-Summary Correction) 또는 Protest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브로커 병목을 피하기 위해 Self-File 등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수출자가 인코텀즈 DDP 조건(수출자가 모든 비용 및 세금 부담 조건)으로 관세를 부담한 경우 적격 환급 청구권 IOR(Importer of Record) 이 있는지 확인 후 환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데이터 먼저 ACE 로 일괄 확보 → IEEPA 순효과만 분리(232조·301조·AD/CVD·면제 품목 분리) → 미청산인 경우 PSC, 청산인 경우 180일 내 Protest로 권리 보전을 합니다. 기한 경과 시 환급권 상실 리스크가 크므로 환급 청구권 지위 확보 및 기한 관리가 중요하며, 환급을 증명하기 위한 대량의 data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부터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³ 미국 상무부 실적 발표(25년 1월 - 11월)에서 12월 수출액 보수적으로 추정

신규 관세 대응 및 고객과 재협상

상호관세 무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유사한 관세 구조가 도입될 것으로 예측했고, 현실화되었습니다.

관세 부과와 장기화가 예상되고, 새로운 15% 관세가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대고객 가격 협상, 공급망 재평가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제품군의 미국 의존도·관세 영향·마진 민감도를 분석하고, 향후 관세 부과 리스크 대비 계약 조항(자동가격조정, 관세부담 주체 명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상호관세 보전 또는 협상이 이뤄진 경우라면 재협상의 실익을 검토하여 환급 규모와 함께 고객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정책 재점검

한국 주요 기업들의 경우 주요 대미수출이 특수관계자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환급 금액 규모 및 이후 관세 부담 분을 고려하여 이전가격 정책 및 법인 손익 관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급된 금액이 반영되는 연도에는 이익율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정되는 미국법인 이익율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 위치 여부, APA 등에 따른 이익율 충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세 절감 노력 및 대미 진출 고려

지속적으로 HTS 분류·원산지 기준·FTA 적용 등 통관 기반을 정교화하여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가격 변동이 단가 변동·고객계약·이전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만큼, 관세-세무-TP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조립 기반 확보(현지화 전략)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각 주의 세액공제·보조금·투자 인센티브와 연방정부의 산업지원(OBBBA)은 현지 생산 시 추가적인 재무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PwC Korea Support

PwC Korea에서는 고객분들의 신속한 환급청구 및 불확실한 관세 Risk로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환급 청구 지원

- ACE Data (Read Only) 권한을 부여 받아 직접 환급 가능 금액 파악
- 고객사 사정에 따른 신속 환급 전략 수립
- 증빙 서류 구비, 다수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지원

2. 이전가격 검토 및 관세 절감 전략 재수립

- 관세 부과 장기화에 따른 이전가격 정책 재정비
- 관세 효과와 연계한 미국 수출 FOB 가격 조정

3. 대미 직접 진출 One stop service

- 대미 진출 실익 검토
- Location Study 및 Tax Incentive 최적화 검토
- 對 주정부 인센티브 협상 지원 등

글로벌 통상 Platform

통상의 변화가 전략이 되는 곳,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PwC Korea 글로벌 통상 Platform은 기존의 글로벌 관세 전략 및 거래구조 변경, 우회수출 대응, 반덤핑·세이프 가드 대응, IRA·CRMA 대응팀에서의 Total Solution 제공 경험, 미국·유럽을 비롯한 Global 투자 자문 및 Deal 자문, 공급망 설계 및 구축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전략적인 Approach 및 통합 Solution을 제공 드리는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Contacts for Global Trade Solution Platform

소 주 현

Partner/리더

02-709-8248

so.juhyun@pwc.com

강 명 수

GTSC 센터장

02-2287-1800

Myung-soo.kang@pwc.com

전 원 엽

Partner/국제조세총괄

02-3781-2599

won-yeob.chon@pwc.com

정 민 우

Partner/해외진출자문

02-3781-9816

Min-woo.jung@pwc.com

한 종 업

Partner/무역구제(반덤핑)

02-3781-9598

Jongyup.han@pwc.com

김 중 현

Partner/무역구제(반덤핑)

02-3781-2338

Joon-hyun.kim@pwc.com

이 승 욱

Partner/무역구제(반덤핑)

02-709-7012

Seung-wook.lee@pwc.com

박 광 진

Partner/해외세제

02-709-8829

Kwang-jin.park@pwc.com

박 준 환

Partner/이전가격

02-709-8991

Jun-hwan.park@pwc.com

최 준 걸

Partner/공급망시스템

02-3781-9803

Jin-kirl.choi@pwc.com

이 영 모

Partner/관세

02-3781-3140

Youngmo.lee@pwc.com

김 현 준

Director/수출통제

02-3781-9161

Hyun-jun_1.kim@pwc.com

PwC Korea 뉴스레터는 PwC Korea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PwC Korea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PwC Korea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PwC Korea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PwC Korea,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PwC Korea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PwC Korea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